

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서

사건번호 : (예: ○○지방법원 2025카단12345)

사건명 :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

신청인(채무자) : 홍길동

주 소 : (주소 기재)

연 락 처 : (전화번호 기재)

피신청인(채권자) : ○○캐피탈 주식회사

주 소 : (주소 기재)

【신청취지】

- 신청인의 급여채권 중 월 (예: 200만원)까지는 압류금지채권으로 변경하여 압류할 수 없도록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합니다.

라는 결정을 구합니다.

【신청이유】

- 신청인은 현재 (회사명)에서 근무하며 월 (예: 280만원)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에 따른 압류금지채권 범위(최저생계비 수준)만으로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.
- 신청인은 배우자 및 (자녀 2명, 부모 등) 총 ○명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며, 월 평균 지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.
 - 주거비(임대차보증금 및 월세) : ○○만원
 - 교육비(자녀 학원, 학교) : ○○만원

- 의료비 : ○○만원
- 생활비(식비, 교통비 등) : ○○만원

3. 현재 기본 압류금지채권 범위(예: 185만원)만 보호되는 경우, 위 필수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어 심각한 생계 곤란에 처하게 됩니다.

4. 따라서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해, 법에서 정한 범위 이상으로 급여채권 중 (200만원)까지 압류금지채권으로 보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.

【첨부서류】

1. 주민등록등본
2. 가족관계증명서
3. 급여명세서(최근 3개월분)
4. 임대차계약서 사본
5. 의료비·교육비 등 지출증빙 자료

2025년 ○월 ○일

신청인 :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귀중